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2021.10.14. 지침 제22호 ]

제정 2021.10.14. 지침 제22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법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법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라.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1)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2)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바.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회사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회사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회사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회사의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그룹장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10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 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 ④ 회사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회사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회사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회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사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회사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회사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회사는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회사는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회사는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이나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직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회사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법령이나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회사는 회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회사는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회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 제5장 보칙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회사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 10. 14.부터 시행한다.

##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접수자	공익신고 책임관

##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공익신고책임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0조= 제5항)

<별지 제9호 서식>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 ○ ○ ○ ○ ○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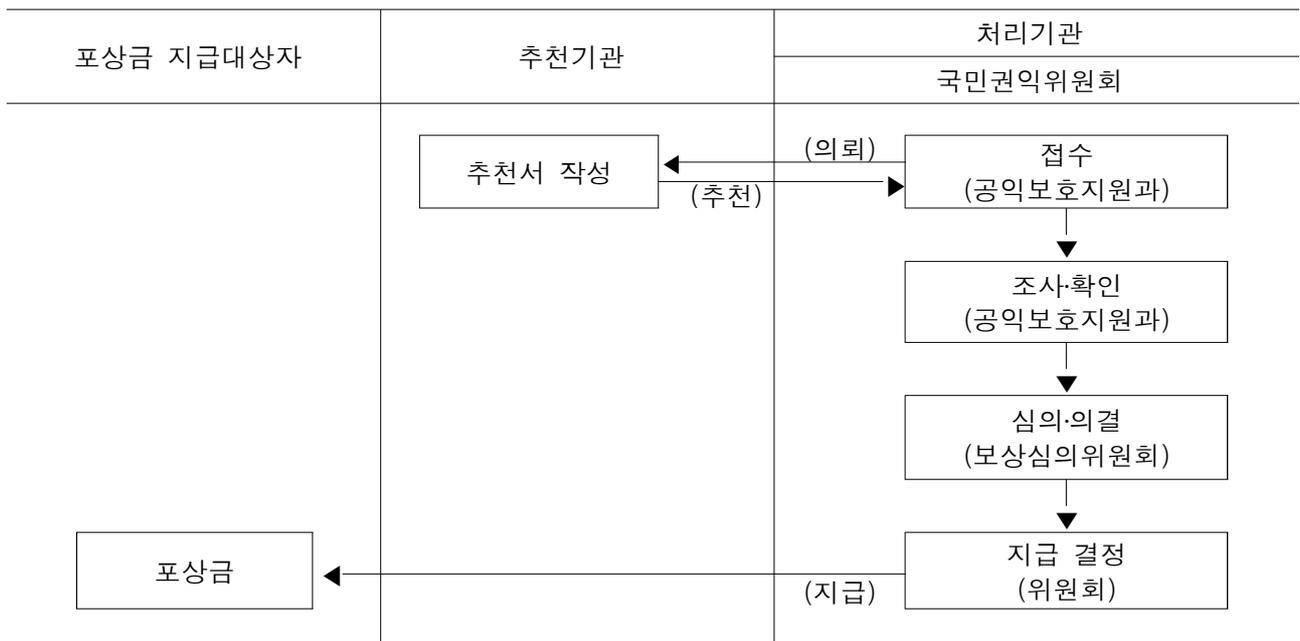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시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재판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별표> (제2조제1호 “공익침해행위” 관련)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가축전염병 예방법」
- 8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1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13 . 「건강검진기본법」
- 1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1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6 . 「건설기계관리법」
- 17 . 「건설기술 진흥법」
- 18 . 「건설산업기본법」
- 1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 . 「건축물관리법」
- 2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22 . 「건축법」
- 23 . 「건축사법」
- 24 . 「검역법」
-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결핵예방법」
- 27 . 「경륜·경정법」
- 28 . 「경비업법」
- 29 . 「경찰관 직무집행법」
- 30 . 「계량에 관한 법률」

- 31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3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33 . 「고용보험법」
- 3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35 . 「골재채취법」
- 3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3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38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39 . 「공공주택 특별법」
- 40 . 「공동주택관리법」
- 4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42 . 「공연법」
- 4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4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45 . 「공인중개사법」
- 46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47 . 「공중위생관리법」
- 48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49 . 「공항시설법」
- 50 . 「관광진흥법」
- 51 . 「광산안전법」
- 52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53 . 「교통안전법」
- 5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55 . 「국가기술자격법」
- 56 . 「국가보안법」
- 5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5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59 . 「국민건강보험법」
- 60 . 「국민건강증진법」
- 6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2 . 「국민연금법」
- 63 . 「국민영양관리법」

- 64 . 「국민체육진흥법」
- 65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6 . 「국유재산법」
- 67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68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69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70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2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73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74 . 「군사기밀 보호법」
- 7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76 . 「군형법」
- 77 . 「궤도운송법」
- 78 . 「귀속재산처리법」
- 79 . 「근로복지기본법」
- 80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8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82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83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8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85 . 「금융지주회사법」
- 8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87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88 . 「기계설비법」
- 89 . 「기초연금법」
- 9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91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 9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93 . 「내수면어업법」
- 94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95 . 「노인복지법」
- 9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97 . 「노후준비 지원법」
- 9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9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10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101 . 「농약관리법」
- 102 . 「농어촌도로 정비법」
- 103 . 「농어촌정비법」
- 104 . 「농업기계화 촉진법」
- 105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농지법」
- 1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8 . 「담배사업법」
- 10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11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1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112 . 「대기환경보전법」
- 11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1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15 . 「대외무역법」
- 116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117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18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19 . 「도로교통법」
- 120 . 「도로법」
- 121 . 「도선법」
- 1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23 . 「도시가스사업법」
- 12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12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126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127 . 「도시철도법」
- 128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1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31 . 「동물보호법」
- 132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3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말산업 육성법」
135. 「먹는물관리법」
136. 「모자보건법」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문화재보호법」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물환경보전법」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민방위기본법」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방송법」
155. 「방위사업법」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병역법」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보안관찰법」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보험업법」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173. 「부정수표 단속법」
-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176. 「비료관리법」
-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1. 「사료관리법」
- 182. 「사방사업법」
-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86. 「사회복지사업법」
-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1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189. 「산림보호법」
-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 194. 「산업안전보건법」
-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6. 「산업표준화법」
- 197. 「산지관리법」
- 198. 「상표법」
- 199. 「상호저축은행법」
- 200. 「새마을금고법」
-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20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5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206 . 「석면안전관리법」
- 20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08 . 「석탄산업법」
- 209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10 . 「선박안전법」
- 211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212 . 「선박직원법」
- 213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214 . 「선원법」
- 21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1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1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19 . 「소금산업 진흥법」
- 22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221 . 「소방기본법」
- 222 . 「소방시설공사업법」
- 223 . 「소방장비관리법」
- 224 . 「소비자기본법」
- 225 . 「소음·진동관리법」
- 226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227 . 「소하천정비법」
- 228 . 「송유관 안전관리법」
- 229 . 「수도법」
- 230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31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32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233 . 「수산업법」
- 234 . 「수산자원관리법」
- 235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236 . 「수상레저안전법」
- 237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238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23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241. 「습지보전법」
-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4. 「식물방역법」
-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 24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24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248. 「식품산업진흥법」
- 249. 「식품안전기본법」
- 250. 「식품위생법」
-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53. 「신용협동조합법」
-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 2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56. 「아동복지법」
- 257. 「아동수당법」
-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59. 「아이돌봄 지원법」
- 260. 「악취방지법」
-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63. 「약사법」
- 264. 「양곡관리법」
-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268. 「어선법」
- 269. 「어장관리법」
- 270. 「어촌·어항법」
- 271. 「에너지법」
-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276. 「연안관리법」
-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27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79. 「영유아보육법」
-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2. 「예금자보호법」
- 283. 「예비군법」
-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87. 「외국환거래법」
- 288. 「외식산업 진흥법」
- 289. 「우편법」
-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291. 「원자력안전법」
-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 293. 「위생용품 관리법」
-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298. 「유아교육법」
-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300. 「유통산업발전법」
- 301. 「은행법」
-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304. 「의료급여법」
- 305. 「의료기기법」
-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307. 「의료법」
-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312. 「인삼산업법」
-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316. 「임금채권보장법」
-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318. 「입양특별법」
- 319. 「자격기본법」
- 320. 「자동차관리법」
-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322. 「자연공원법」
- 323. 「자연재해대책법」
- 324. 「자연환경보전법」
- 325. 「자원순환기본법」
-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3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33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33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338. 「장애인복지법」
- 339. 「장애인연금법」
-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345. 「재해구호법」
-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34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348. 「저작권법」
-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35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351. 「전기공사업법」
- 352. 「전기사업법」
-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355. 「전기통신기본법」
- 356. 「전기통신사업법」
- 357. 「전력기술관리법」
- 358. 「전자금융거래법」
-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61. 「전자서명법」
-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4. 「전파법」
-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371. 「제품안전기본법」
- 372. 「중자산업법」
- 373. 「주거급여법」
- 374. 「주민투표법」
-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76. 「주차장법」
- 377. 「주택법」
- 378. 「중소기업은행법」

-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84. 「지방세기본법」
- 385. 「지방재정법」
-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387. 「지역보건법」
- 38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38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390. 「지하수법」
-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92. 「직업안정법」
-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97. 「철도사업법」
- 398. 「철도안전법」
-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400. 「청소년 기본법」
- 401. 「청소년 보호법」
-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 404. 「청원경찰법」
-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4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08. 「초지법」
- 4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 411. 「축산법」
- 412. 「출입국관리법」
-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417. 「토양환경보전법」
- 418. 「통신비밀보호법」
-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422. 「폐기물관리법」
-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4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27. 「하수도법」
- 428. 「하천법」
- 429. 「학교급식법」
- 430. 「학교보건법」
-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3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34. 「한국마사회법」
-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43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438. 「항공보안법」
- 439. 「항공사업법」
- 440. 「항공안전법」
- 441. 「항로표지법」
- 442. 「항만법」
- 443. 「항만운송사업법」
-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445. 「해사안전법」
- 446. 「해양경비법」
-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51. 「해양환경관리법」
- 452. 「해운법」
- 453. 「혈액관리법」
- 45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457. 「화장품법」
-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460. 「화학물질관리법」
-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462. 「환경보건법」
- 46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464. 「환경영향평가법」
-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466. 「환자안전법」
-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468. 「초·중등교육법」
- 469. 「고등교육법」
- 470. 「사립학교법」
- 471. 「근로기준법」